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대상 건물·시설 주소지	주소 (우편번호) ※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합니다.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사실	[]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세대주 변경 사실	[]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	[]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송	[] 우편	

이
호
지

첨부서류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로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건물·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건물·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 또는 변경 신청만 해당합니다. 1.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가.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나. 건물·시설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다. 건물·시설의 임대인인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6제2항 전단에 따른 확정일자부 2.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3.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4.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7. 신청 대상 건물·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문자 등은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등의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 등이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0. 모든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본인이 신청·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